



보험업감독규정의 최근 주요 개정 내용

백영화 연구위원

2019. 10. 2. 보험업감독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.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수준 차등화(예: 온라인 방카슈랑스에 대한 비교·설명 의무 폐지), 보험상품별 규제 수준 차등화(예: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 이해도 평가 면제), 전자문서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(예: 사이버몰을 통한 모집 시 전자문서 제공 원칙 규정) 등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. 아울러 의료자문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,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 등도 개정 내용에 포함되었음

■ 2019. 10. 2. 보험업감독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

-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¹⁾ 추진 결과 정비하기로 결정된 규제를 개선하고 있음
 -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수준 차등화, 소비자 보호 필요 정도에 따른 상품별 규제 수준 차등화, 전자문서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
- 그 외에도 의료자문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,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, 보험설계사 교육제도 개선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됨
-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은 2019. 10. 2.부터 시행되며, 다만 의료자문 설명의무,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및 내부통제,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방지교육 관련 조항들은 2020. 1. 1.부터 시행될 예정임
- 이하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조항들 중에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봄

1)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전 정부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이며, 정부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규제를 폐지·완화하는 것임

■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규제 정비

- 온라인 방카슈랑스에 대한 비교·설명 의무 폐지(제4-39조)
 -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종·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(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,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,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함)을 비교·설명하고 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함
 - 그러나 개정 규정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(이른바 '온라인 방카슈랑스') 위와 같은 비교·설명 의무를 면제함
-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(TM 모집) 시 전자문서 제공 허용(제4-36조)
 - TM 모집의 경우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청약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했으나, 개정 규정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상품설명서를 서면 외에 광기록매체,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도 허용함
- TM 모집 시 자필서명이 면제되는 보험계약의 범위 확대(제4-37조)
 - TM 모집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지만, 일정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²⁾ 자필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음
 - 개정 규정에서는 위와 같이 자필서명을 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보험계약의 범위에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³⁾이 추가됨
- 사이버몰을 이용한 보험모집(CM 모집) 시 전자문서 제공 원칙 규정(제7-45조의2)
 -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료(보험증권, 상품설명서, 청약서, 보험약관 등)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다만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광기록매체,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음
 - 개정 규정에서는 CM 모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⁴⁾ 다만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

2) 본인확인내용, 보험청약내용,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·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·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, 그 음성녹음 내용을 전화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(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, 보험업 감독규정 제4-37조)

3)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의한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,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경우여야 하고,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아래 제1호,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경우여야 함

1.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, 보험금액,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,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
2. 전자문서에 상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(이하 "전자서명"이라 함)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
3.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
4.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

4) 이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해 교부되는 보험계약자료는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재생을

- 전문보험계약자⁵⁾ 대상 상품에 대한 모집 규제 완화(제7-45조, 제7-82조)
 -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·상품설명서·사업방법서·보험약관을 공시할 의무, 1년 이상 유지 계약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할 의무를 면제함
 -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
- 기업성보험 등에 대한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비교·설명 의무 완화(별표 9)
 - 대형법인보험대리점⁶⁾은 보험모집 시 동종·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·설명하고 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함
 - 개정 규정에서는 기업성보험, 자동차보험(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료 비교·공시 조회 결과를 보험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), 간단손해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비교·설명 의무를 면제함
- 보험 이미지 광고 허용시간 연장(제4-35조의4)
 - 보험 이미지 광고(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) 최장 시간이 1분에서 2분으로 연장됨
- 특별계정 운용으로 인한 손실의 처리 관련(제5-7조, 제6-27조)
 - 특별계정과 일반계정 간의 자금이체는 법규상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, 개정 규정에서는 자금이체 허용 사유로서 “특별계정의 결손을 일반계정의 주주지분으로 보전하는 경우”를 추가함
 - 퇴직보험계약(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은 제외) 특별계정 운용으로 인한 손실은 특별계정의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지분에서 전액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데, 위 주주지분과 관련하여 특별계정의 주주지분이 부족한 경우 일반계정의 주주지분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함
-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 납입방법 확대(제2-9조)
 - 기존에는 외국보험회사가 원화로만 영업기금을 납입할 수 있었으나, 개정 규정에서는 원화뿐만 아니라 OECD국가통화 및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-(S&P 기준) 또는 이에 준하는 신용등급 이상인 국가의 통화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함
-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간소화(제4-4조)
 - 일반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 시에는 임원의 이력서 및 고지사항, 주주 전체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는데,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한하여 이력서 및 고지사항을 제출하고 주주명부의 경우에도 주요주주의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함

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생프로그램을 당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되는 보험계약자료에 내장해야 하며,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자료를 교부해야 함

5)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금융기관, 상장법인 등

6)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

■ 의료자문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

-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함(제4-35조의2)
 - 보험회사는 보험금 심사·지급 단계에서 다음의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함:
 - 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, 의뢰 사유,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
 -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, 위 ①에 따른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자문을 의뢰한 기관과 자문 의견
 - ③ 그 밖에 위 ①과 ②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
 - 위 의료자문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2020. 1. 1.부터 시행됨

■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

-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내부통제 체계 및 준법감시인 요건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함(별표 9)
 - 강화된 기준은 2020. 1. 1.부터 시행됨

〈표 1〉 대형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의 주요 내용

1.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지침 관련

- (현행)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
- (개선)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, 보험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지침을 정하고,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지침에 일정한 사항을 포함할 것
 - ☞ 업무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 예시: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,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,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·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,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·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처리,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,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및 업무상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,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,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자율협약에 대한 사항, 소속 보험설계사 위촉관리에 관한 사항 등

2.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인 조직 관련

- 준법감시인 자격 관련, 보험회사 등에서의 근무 경력 조건을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자격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
-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내부통제 이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신설
- 준법감시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 신설
- 직전 분기 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1,0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(소속 보험설계사의 인원에 비례하도록 할 것)의 인력으로 지원 조직을 구성·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 신설

3. 내부통제제도 운영 관련 준수 기준

-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둘 것
- 지점장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
- 준법감시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와 미비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이사회 및 감독원장에 보고할 것

■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의 세부사항 규정

-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(2019. 10. 1.)으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분리하여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하기로 하였으며, 이에 따라 개정 규정에서 불완전판매방지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(제4-5조)
 - 불완전판매방지교육 대상은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%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이며,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으로 함
 - 불완전판매방지교육에 관한 조항은 2020. 1. 1.부터 시행됨 **kiri**